

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배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15.

발의자 : 조배숙 · 최경환(평) · 김종회

윤영일 · 천정배 · 유성엽

김광수 · 장정숙 · 정인화

황주홍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 및 지원,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가 2016년 2월부터 설치·운영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예산, 역할,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,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하였고,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, 홍보,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한편,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
2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
3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
4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·제도 개선 건의
5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건에 대한 사후관리
6.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5조(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5조(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</u></li> <li><u>2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</u></li> <li><u>3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</u></li> <li><u>4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·제도 개선 건의</u></li> <li><u>5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건에 대한 사후관리</u></li> <li><u>6.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</u></li> </ol>

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 
한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  
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 
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 
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
할 수 있다.